

교육부령

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
폐지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유은혜 (교육부장관)
연 월 일	2021. 9. 15.

법제처 심사 전

1.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

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 되어 동법 시행령에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」의 내용이 모두 규정 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고,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,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교육부령 제188호

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폐지령안

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을 폐지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(원문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82. 2. 27., 1999. 7. 1.>

제2조(협력학교의 지정)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(이하 “방송대학”이라 한다)의 협력학교를 지역별로 별표와 같이 정한다. <개정 1992. 6. 12., 1999. 7. 1.>

제3조(협력학교의 임무) 협력학교는 방송대학 학생의 출석수업과 학기말 시험을 실시하며, 이에 따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. <개정 1992. 6. 12., 2019. 9. 17.>

1. 출석수업기간중의 강의, 실험 실습 및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
2. 학급편성, 시간표 작성 및 강사진 확보
3. 방송대학의 학칙에 의한 시험실시와 성적 평가
4. 기타 방송통신교육에 관하여 방송대학장이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

제4조(출석수업의 시기 및 시간수) 협력학교가 실시하는 방송대학 학생에 대한 출석수업의 시기 및 시간수는 방송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. <개정 1992. 6. 12.>

[전문개정 1981. 2. 20.]

제5조(수업준비) ① 방송대학장은 협력학교별 출석수업자 명단·출석수업시간

배당기준 및 기타 출석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개강 60일전에 각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1992. 6. 12.>

②협력학교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방송대학학생에 대한 출석수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, 이를 교육실시 30일전에 방송대학장에게 통보하여 상호협의를 한 후 출석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1979. 2. 12., 1992. 6. 12.>

제6조(결과통보) 협력학교의 장은 방송대학학생에 대한 출석수업의 실시결과를 그 수업종료후 2주일내에 방송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1992. 6. 12.>

제7조(운영지원) 방송대학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력학교의 방송대학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1992. 6. 12.>

제8조(학생징계) ①협력학교의 장은 방송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. <개정 1992. 6. 12.>

②협력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한 때에는 그 결과를 방송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1979. 2. 12., 1992. 6. 12.>

제9조(시행세칙) 방송통신교육에 관하여 이 규칙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방송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. <개정 1992. 6. 12.>

[전문개정 1982. 2. 27.]